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72 발의연월일: 2024. 7. 26.

발 의 자:한정애·서삼석·김 윤

조인철 • 문진석 • 주철현

박수현 · 박희승 · 송옥주
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.

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. 특히 최근 친족 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 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 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354조 및 제361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第328條와 第346條의"를 "제346조의"로 한다.

제354조(동력)

제361조(동력)

제3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 중 "第328條와 第346條의"를 "제346조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친족간 범행의 형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54條(親族間의 犯行, 動力) 第	제354조(동력) 제346조의
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	,
章의 罪에 準用한다.	
第361條(親族間의 犯行, 動力) 第	제361조(동력) 제346조의
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	
章의 罪에 準用한다.	